5등급차 운행제한 관련 회의

< 환경부 교통환경과, '20.11.4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수도권 계절관리제) 정확한 내용 안내 및 수도권 진입 차량에 우선지원

- 저공해조치 신청시 인천·경기에서 단속에서 제외됨.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비상저감조치) 수도권외는 첫 시행으로 시스템 정상작동 상시 유지, 영업용·저공해조치 불가·저공해조치 신청 등 유예 사항 안내

○ (저공해조치 신청) '20. 11월까지 "등급시스템"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시스템에 접수된 신청 차량 관리는 저감사업 지원 시스템으로 관리

※ 지자체에서 직접 접수받은 차량은 시스템에 반드시 업로드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저감사업관리 시스템으로 연계 → 저공해조치 명령(모바일 전자고지) → 저공해조치 이행 등 시스템으로 관리

○ (안내와 홍보) 서울시와 인천·경기 운행제한 내용이 상이하여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주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 필요

- 환경공단에서 전국의 모든 5등급 차주에게 모바일 안내
- 수도권 시·도에서는 계절관리제 모의단속과 병행 안내
- 모든 시·도에서는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도록 안내, 수도권 진입 차량에 대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

□ 향후 계획

○ 비상저감조치 17개 시·도 운행제한 모의단속(11. 16~11.20)

※ 위반 차주에게 "운행제한 위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등" 안내문 발송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개소식**(환경공단, 11.27)

○ 전국 5등급 차량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환경공단, 11월 3주)

○ 운행제한(계절제, 비상저감조치) Q&A 마련·배포('20.11월말)

○ 운행제한 홍보계획 마련 및 주기적인 실적 취합

○ 수도권외 6개 특·광역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조례 마련**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참고 1 수도권 계절관리제 5급 차량 운행제한

□ 기본방향

○ 5등급차량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

□ 수도권 3개 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내용

<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

구분	경기도·인천시	서울시
단속 내용	• '20.12~'21.3월(평일, 06:00~21:00), 위반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20.10월말 현재 142만대)	
단속 예외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 저공해조치 명령(시·도지사 등)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제외 •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폐차 포함)시 환불 또는 취소

※ 세부내용

① 수도권 외 지역 포함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량이 수도권 운행시 단속대상에 포함

② 하루에 2개 이상 시·도의 단속에 적발된 경우 최초 적발지에서 한번 과태료 부과

③ 서울시 단속 대상 예외로 인정되는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소유 차량"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④ 서울시의 경우 2차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서울 4대 문안 녹색교통지역과 그 외 서울 전역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

⑤ 수도권 단속카메라는 총 321대(서울 136 인천 44, 경기 141) 설치·운영중

⑥ 경기·인천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기관리권역법」 등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6개월 이내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⑦ 실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5등급차 운행제한 실시

⑧ 제3차 계절관리기간('21.12~'22.3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확대를 검토

참고 2 5등급차량 현황(20. 10월말 현재)

○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량은 전국 142만대, 이중 수도권은 33만대

(단위 : 대)

구분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조치 여부			저감장치 장착불가	저공해조치신청		
		계	저공해조치	미조치		계	장치부착	조기폐차
총 계		1,745,186	324,880	1,420,306	350,818	377,281	302,642	74,639
수도권	소계	569,414	241,961	327,453	108,028	111,400	102,450	8,950
	서울	168,715	83,221	85,494	21,670	17,572	16,515	1,057
	인천	76,306	40,483	35,823	25,923	10,229	9,562	667
	경기	324,393	118,257	206,136	60,435	83,599	76,373	7,226
수도권외	소계	1,175,772	82,919	1,092,853	242,790	265,881	200,192	65,689
	부산	98,767	10,491	88,276	11,581	1,826	1,481	345
	대구	84,185	7,924	76,261	11,077	15,625	6,773	8,852
	광주	46,878	3,086	43,792	7,352	8,563	3,315	5,248
	대전	45,139	5,577	39,562	8,120	10,683	6,456	4,227
	울산	42,594	3,465	39,129	5,410	3,032	2,578	454
	세종	8,409	640	7,769	3,005	2,841	1,673	1,168
	강원	76,545	5,488	71,057	10,677	5,536	4,135	1,401
	충북	70,964	6,194	64,770	10,484	19,668	8,571	11,097
	충남	106,794	8,847	97,947	13,816	50,282	43,411	6,871
	전북	88,113	9,266	78,847	24,701	34,627	26,513	8,114
	전남	120,176	6,638	113,538	12,068	3,123	2,646	477
	경북	185,545	7,969	177,576	79,256	51,194	47,778	3,416
	경남	163,638	5,373	158,265	39,856	58,488	44,536	13,952
	제주	38,025	1,961	36,064	5,387	393	326	67

참고 3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현황

구 분		단속카메라(대)			단속지점
		계	신규설치	방법용 활용	
총계		**978**	**620**	**358**	**618**
수도권	소계	**321**	**321**		**176**
	서울	136	136		76
	인천	44	44		22
	경기	141	141		78
수도권외	소계	**657**	**299**	**358**	**442**
	부산	50		50	22
	대구	27	27		20
	광주	16	16		9
	대전	40	40		22
	울산	18	18		12
	강원	20		20	12
	충북	20	20		16
	충남	41	41		38
	전북	154		154	100
	전남	50	50		35
	경북	39	39		38
	경남	75	30	45	60
	세종	24	4	20	9
	제주	83	14	69	49

참고 4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검토안

□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적용

○ 수도권 계절관리제

- (서울시) '21. 1월부터 단속 **생계형* 차량**은 제외

  *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인천·경기) '21. 12월부터 단속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 '21.1월부터 단속

□ 조기폐차시 추가 지원

○ 60만원을 추가하여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생계형 차량은 차량기준 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

☞ **검토안 : 폐차보조금 상향, 연식에 따른 차등지원, DPF 부착불가와 생계형 차량 추가 지원 등을 조기폐차 유인책 도출(~'21.8월)**

참고 1 저공해조치 불가 차량 현황('20.10월 기준)

구 분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합 계		350,818	147,106	21,130	179,773	2,809
수도권	소 계	108,028	59,337	8,558	38,908	1,225
	서 울	21,670	16,149	1,277	4,231	13
	인 천	25,923	9,213	2,957	12,895	858
	경 기	60,435	33,975	4,324	21,782	354
수도권 外	소 계	242,790	87,769	12,572	140,865	1,584
	부 산	11,581	7,195	924	3,455	7
	대 구	11,077	6,789	278	3,974	36
	광 주	7,352	5,022	207	2,119	4
	대 전	8,120	5,145	458	2,510	7
	울 산	5,410	3,438	104	1,865	3
	세 종	3,005	1,032	214	1,745	14
	강 원	10,677	5,345	322	4,984	26
	충 북	10,484	5,743	406	4,330	5
	충 남	13,816	7,623	532	5,643	18
	전 북	24,701	7,120	1,510	15,832	239
	전 남	12,068	6,071	555	5,396	46
	경 북	79,256	14,112	4,092	60,251	801
	경 남	39,856	10,572	2,822	26,086	376
	제 주	5,387	2,562	148	2,675	2